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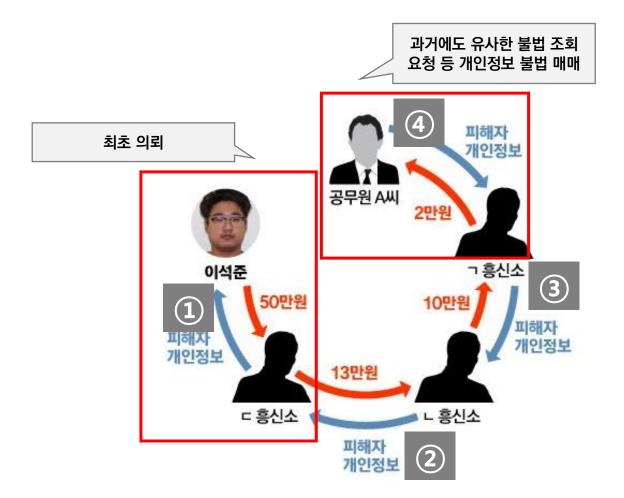
Ⅱ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 2.1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현황
-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2.1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현황



😈 송파 스토킹 살인사건과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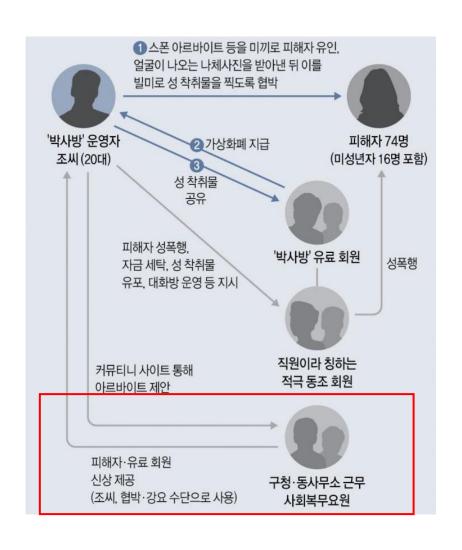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1〉

- ① 스토커 이씨가 'ㄷ' 흥신소 직원에게 50만원을 주고 피해자 집 주소 조회 의뢰
- ② 'c' 흥신소 직원은 'c' 흥신소 직원에게 다시 13만원을 주고 피해자 정보 조회 의뢰
- ③ 'ㄴ' 흥신소 직원은 다시 10만원을 주고 'ㄱ' 흥신소 직원에게 피해자 정보 조회 의뢰
- ④ 공무원A씨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변 보호자 주소를 파악한 뒤 2만원을 받고 'ㄱ' 흥신소에게 피해자 정보 판매

2.1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현황



😈 N번방 회원 협박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2〉

-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물 영상 이용자(유료 회원)을 협박하기
 위해 회원 정보 조회 시도
-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구청 동사무소 근무자인 공익 근무요원 최 씨에게 회원정보 조회 요청
 - 공익근무요원 최 씨는 서울시 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초본 발급 업무 수행
- 최씨는 주민센터 자동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후 그 중 17명의 개인정보 제공
- 조주빈 일당은 해당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협박 및 강요

2.1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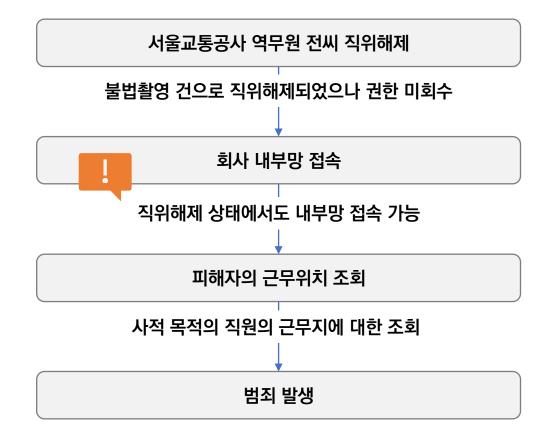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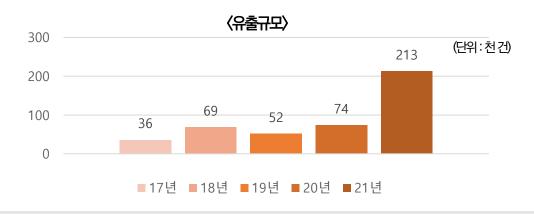
2.1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현황



☞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처벌 현황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규모





연도별 처벌 현황

(단위: 건수)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월
파면	2	2	1	-	-
해임	4	-	-	1	-
강등	1	-	1	-	-
정직	2	2	2	1	-
감봉	2	2	3	6	1
견책	1	4	7	15	2
기타	21	33	44	48	9
합계	33	43	58	71	12

▶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규모 수는 증가하지만 연도별 중징계 처벌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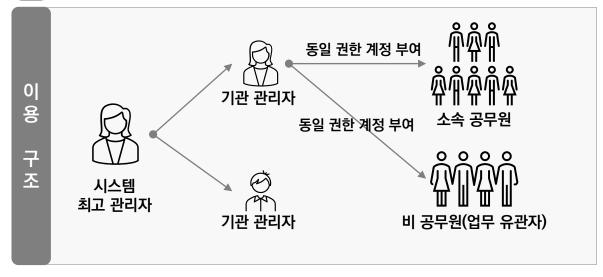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이슈와 개인정보 침해요소

▶ 일반적인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구조 예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

모호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주체

- 부처와 산하기관, 산하기관과 업체간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
-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무원의 제한적인 관리 범위
- 형식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미흡한 접근권한 관리

- 기관별 관리자가 존재하나 잦은 보직변경과 계정에 대한 총괄 관리 미흡
- 부서 이동, 휴직, 퇴사에 따른 취급자 계정 권한 변경 관리 소홀
- 기관 내부 계정공유 등 계정 부정사용 관리 미흡

내부 부정 또는 사적 이용 탐지 어려움

- 형식적인 접속기록 점검으로 내부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정사용 또는 사적 이용에 대한 탐지 어려움
- 비정상적 접근 시도 탐지 미흡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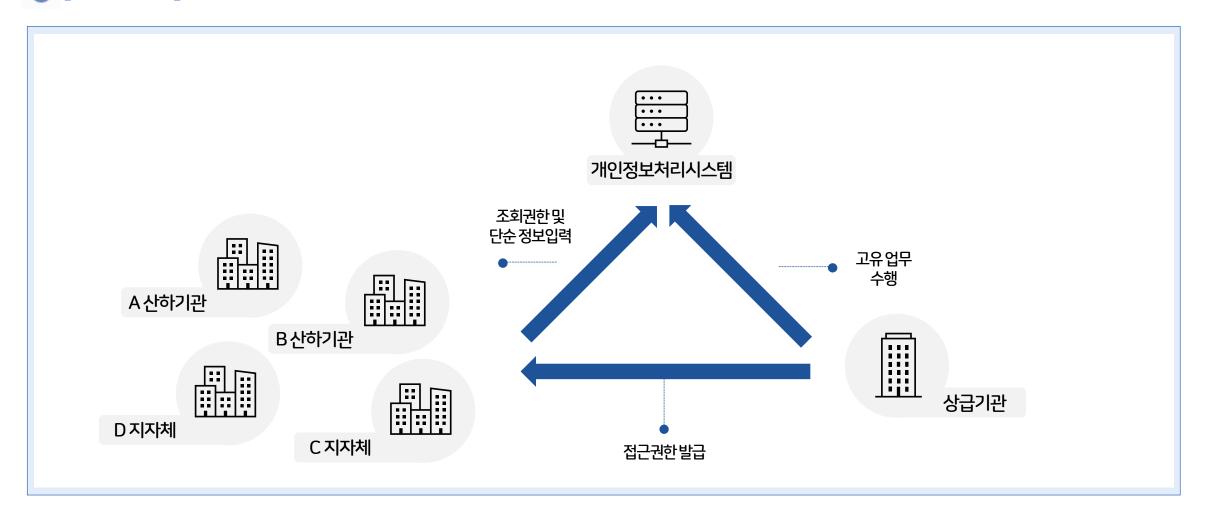
😈 [참고자료]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유형

Ξ	구분	시스템 수	정의	유형별 특징	사례	
공통	단일접속	112	■ 전국적인 공통 업무를 위해 부처가 단일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수의 기관이 이를 사용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큼 이용기관과 취급자가 많아 관리체계가 복잡함 구축운용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보육행정지원, 자동차관리, 1365자원 봉사포털, 건설기계관리정보 등	
시스템	표준배포	3,884	■ 부처는 표준 패키지시스템을 개발· 배포하고, 지자체 등 기관별로 각자의 지역 시스템을 구축·이용	 주로 지자체 단위에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사용 구축·운영·이용기관과 취급자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관리체계와 책임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 	■ 새올(시군구)행정, 시도행정, 표준지방 세정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 건축행 정(세움터),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종 합공부, 지적행정, 지방행정재해복구, 재난관리	
개별	실시스템	12,203	■ 전국 단위의 고유업무용으로 기관별로 개발·구축	 전국 단위로 사용되므로 규모가 큼 외부 이용기관이 거의 없으며, 취급자가 주로 내부 직원으로 한정되어 관리체계와 책임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 	■ 홈택스, 112통합시스템, 의료급여, 병 무행정, 인터넷등기소, 출입국관리정보, 자동검역, 주택청약, 보험신용정보, 행 정정보공동이용 등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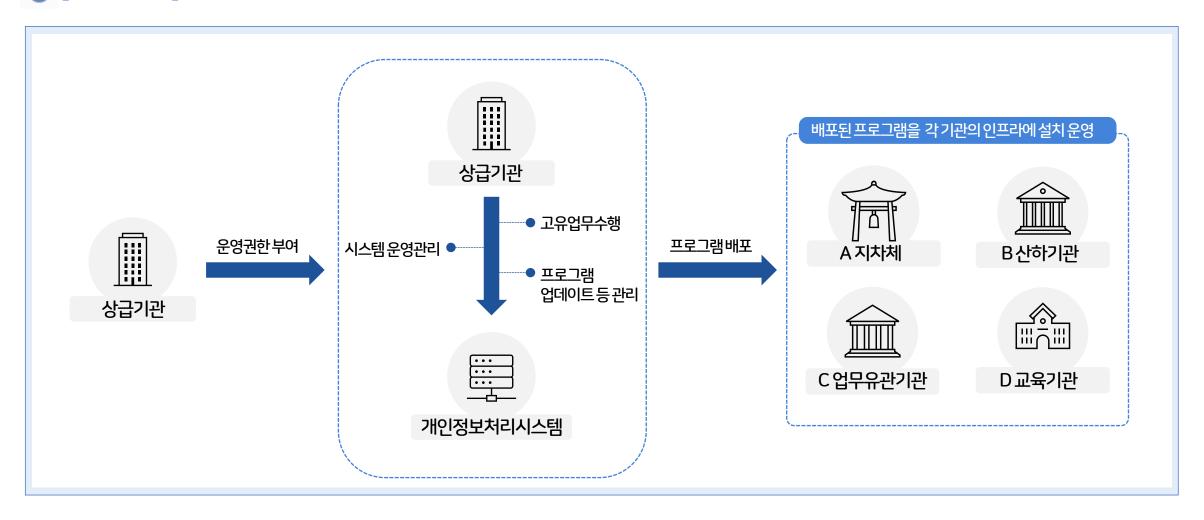
😈 [참고자료] 단일접속 시스템 예시



0 000000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 [참고자료] 표준배포 시스템 예시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이슈와 원인 분석

개인정보보호 이슈 유형(발견 사례)

운영 목적 외 과다 조회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악용해 시스템 운영 목적을 넘어선 정보 조회 가능

자체 접속기록 점검 불가

- 접속기록 점검 시 상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가능하는 등
- 자체적인 접속기록 점검활동에 제약이 존재함
- 또한 접속기속 관리시스템 내 의무 보관항목 누락시스템이 30% 차지

형식적인 관리 및 점검

■ 개인정보보호 활동 시 형식적인 점검 및 관리

접근권한 변경 관리 미흡

■ 인사 이동 시 권한 현행화 소요 기간: 5일 이내 51%, 15일 이내 6%, 1개월 이내 20%, 3개월 이내 9%, 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9%)

원인 분석

낮은 수준의 제재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 불충분한 제재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어려움

허술한 안전조치

- 접근권한 과다 부여 및 접근권한 관리 소홀
- 형식적인 접속기록 점검
- 개인정보 보호 중심 개발 미흡

분절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 운영기관·이용기관 간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시스템별 권한 책임 모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투자·제도 미흡

-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및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개인정보 보호 투자 미흡
-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문제원인과 개선 방향

문제 원인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1) 고의 유출 처벌 강화

추진방안

고의 유출에 대한 징계 강화

고의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공공부문 처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

세부 추진사항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권고 실질화

- 한번이라도 고의 유출, 부정 이용 시 공직 퇴출
- 보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정 조치 시 징계권고 병행
 -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발표

부정 이용 처벌 신설

공무원 가중처벌

고발 의무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이 고의 유출 시 가중처벌 검토
- 개인정보 고의 유출. 부정 이용하는 경우 고발 의무화 추진

과태료·과징금 부과

-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조치하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적극 부과(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시행령 개정)
 - ※ 주민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관련 법 개정안) 법 제59조(금지행위),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경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개인정보 무단 수집·열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3, 개인정보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4. 개인정보 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2) 법 위반 단속 강화

추진방안

집중관리 시스템 기획 점검 실시

개인정보 보호 감사 강화

세부 추진사항

조사대상

■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 실태점검

조사내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중점 점검

조사방향

■ 주민등록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단일접속시스템 우선 점검, 표준배포시스템('24년), 개별시스템('25년) 순으로 점검 예정

※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도자료 참조

감사 방법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 감사 기능 강화 및 기획 감사 실시

감사 주체

■ 각 부처에서 주관하여 소관 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감사 실시



(관련 법 개정안)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시정조치 등)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3) 집중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추진방안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 강화

세부 추진사항

■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 16,199개 중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1,515개 시스템 선정

구분	시스템 수	선정기준
단일접속시스템	78	① 개인정보 100만 건 이상 or ②취급자 200명 이상 or ③ 민감정보(20만 건 이상 and 취급자 20명 이상)
표준배포시스템	1,397	전국 공통 민원 사무 용도
개별시스템	40	① 개인정보 100만 건 이상 or ② 취급자 200명 이상 or ③ 주민등록연계 or ④ 개발비100억 원 이상
대형유출·교사템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등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발생

조사대상

시스템 선정

조사내용

- 집중관리 시스템」우선 적용('22~'24) →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고시) 제정('23.말) → 전체 공공부문 의무화('24~'25)
- ①접근권한 관리, ②접속기록 점검, ③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 등 3단계 안전조치 기준 강화



(참조자료) '23년 4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시행령 및 고시) 신설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안전조치 강화계획 – 시스템 관리체계 분야

조사현황

시스템 중 55%가 책임자 미지정, 97%가 시스템별 협의회 미설치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추진 시기 : '23년)

- **총괄 관리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 책임자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

기관·분야·시스템별「개인정보보호협의회」설치·운영 (기관 책임자, 시스템 책임자, 운영기관, 수탁기관 등) (추진 시기 : '23년)

- 협의회는 소관 시스템의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연 1회 이상)
- 시스템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기관 내부관리계획 중 안전조치 방안을 시스템별로 수립·시행 (추진 시기 : '23년)

- 내부관리계획 각 항목* 아래 시스템별 조치계획을 수립
 -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교육,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등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안전조치 강화계획 – 접근권한 통제·관리 분야

조사현황

시스템 중 60%가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곤란, 55%는 목적외 이용에 대한 통제장치 불비

접근권한 관리 기능이 인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시기 : '23~'25)

■ 계정이 인사시스템(담당부서, 업무)와 불일치시 접근권한 자동 변경·말소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분장에 맞게 필요최소한으로 부여토록 개선 인사이동 후 지체 없이 접근권한 현행화 (추진 시기: '23~25년)

■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을 대메뉴 단위로 부여하는 행위 지양

인사시스템 미등록자(非 공무원)에 대한 계정발급 원칙적 금지 (추진 시기 : '23년)

■ 긴급·예외적 계정발급에 대해 기관별 발급절차 도입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안전조치 강화계획 – 접속기록 점검 분야

현황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 중 1,015개(67%)가 접속기록 점검 기능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상행위 탐지 등 점검체계 미흡

점검기능이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 도입 또는 기능보완 및 이상행위 탐지·차단기능 구현 (추진 시기: '23~'25)

■ 점검 기능에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접근 행위를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 주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사생활 정보 접근에 대한 상급자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절차 (추진 시기: '23~25년)

■ 기관별 승인·보고 대상이 되는 접근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시행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안전조치 강화계획 – 전담인력 및 시스템 확충 분야

현황

기관별 전담인력 0.4명, 근속비율 21% 불과, 시스템 중 44%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 확충 필요성 제기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추진 시기 : '23~'25)

- 개인정보보호 법령(하위법령·지침 등)에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23.)
- 전문직위 지정. 인센티브 등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적용
- 기관별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 실시(매년)

인사시스템 연계, 접속기록 점검기능 구축·보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기관별 예산 확보 후 순차 시행 (추진 시기: '23~25년)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 실태점검
 - '23년에는 주민등록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단일접속시스템 우선 점검
 - 이후 '24년 표준배포시스템, '25년 개별시스템 순으로 순차 점검
-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한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점검 대상에 포함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내실화

추진방안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스템 감리 시 개인정보 보호 점검 강화

세부 추진사항

영향평가 대상 확대

- 영향평가 대상에 질적 기준 추가(개인정보 보유량 → 민감도·중요도, 취급자 수 고려
-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구축변경 시 예산 필수 반영 및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 점검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실적의 적절성 점검

감리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반영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가이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반영
- 안전조치 기준 : ① 접근권한 관리, ② 접속기록 점검, ③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 등 3단계 안전조치 기준 강화



(참조자료)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5) 개인정보 처리 책임·역할 명확화

추진방안

시스템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이용기관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세부 추진사항

적용 대상

관리체계

■ 집중관리 시스템 소관 부처와 운영기관

 ①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설치 → ② 시스템 책임자 지정 → ③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 통합적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

수탁자

■ 수탁자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 수탁자도 필수적으로 조사, 처분 규정 신설

이용기관

■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책임 강화 : 주 이용기관인 지자체가 취급자 계정 접속기록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용기관의 책임과 역할 구체

조례 정비

협력 체계

■ 관리체계가 취약한 지자체에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여 조례·규칙 정비 지원 (22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3개(9%)임

■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 확대



(관련 법 개정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지방자체단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주요 내용

목적 및 원칙 등

- (목적) 시·도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관리와 정보주체 의 권리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
- **(원칙)**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원칙 규정
- **(책무)** 사생활 보호 및 권리보호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및 자율보호 활동 지원 의무 규정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역할 및 구성·운영

- **(역할)** 협의회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 보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하기 위 한 정책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
- (구성·운영) 협의회는 시·도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 시·도의회 소속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시·도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정기회(연 2회) 및 임 시회로 운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기본계획수립)** 일관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 3년 마다 시·도의 개인정보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시·도의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규율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시 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체계 마련)** 시·도에서 수집·처리되는 개 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평가,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영향 평가, 유출 등 발생시 대응방안, 개인정보 파기 및 개인정보 취급 자를 관리 및 교육 등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6) 개인정보보호 평가 내실화

추진방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내실화

정부평가에 수준진단 결과 반영

대상 및 지표 확대

자체 진단 도입

컨설팅 기능

실효성 확보

세부 추진사항

■ 진단 대상 확대*. 기관(장) 책임성 등 정성지표 신설

■ 정량지표에 대한 자체 진단 시범 도입

■ 진단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 확대

■ 현장 검증 대상 확대*, 최하위 등급기관 기획 점검 등 진단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각종 정부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수준진단 결과 공개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결과를 각종 정부평가에 포함시켜 기관(장)의 관심도 및 책임성 제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내 기관별 관리수준 진단 결과(등급) 공시



(참조 법 개정안)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 '22년 관리수준 평가 제도 전면 개편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7)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 구축

추진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 강화

개인정보위의 공공부문 대응 기능 강화

세부 추진사항

적정 인력 배치

■ 집중관리 시스템 ,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 권고 - (참고) 정보공개법 제6조: 정보공개 업무 주관 부서 및 담당 인력 적정 배치 의무

시스템 확충

■ 각 기관은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등 강화된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

〈필수 시스템 예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 시스템 연계, 승인·소명·통지 절차 시스템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예산, 이상행위 탐지·차단 시나리오 개발

조사 기능 확대

-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조사 기능 확대
 -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연례 기획 점검 등 신규 기능 확대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의견 제시,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권고 등 공공부문 평가·진단 기능 확대



(참조자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8)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 수집 원천 차단

추진방안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정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시스템 도입

세부 추진사항

부처별 법령 정비

- 보건·복지, 환경, 노동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식별 및 개선
- (행정·사법 분야 법령 정비) 형사법, 법원, 선거·정당 등 행정·사법 법령 정비로 권력 기관 감시자 역할 강화
- (기타분야 법령 정비) 조세, 농·수산, 문화·관광, 항공, 외무 등 기타 분야 법령 정비로 현행 법령 정비 예정

침해 요인 자가 진단

■ 부처에서 소관 법령 제·개정안 마련 시,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자가 진단 활용 지원



(참조자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정비 계획(안)

단계	주요 분야	세부 분야	대상 법령	일정
1단계	국민 생활 밀접 15개 분야	 보건, 복지, 환경, 노동, 경찰 교육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토, 주택, 건설 등 	2,178개	22년 개선추진 완료
2단계	행정·사법 14개 분야	 헌법, 법원, 법무, 형사법, 민사법 국회, 선거 · 정당, 지방제도 국가공무원, 군사, 병무, 국가보훈 등 	1,662개	22년 조사 23년 개선 추진
3단계	기타 15개 분야	 내국세, 관세,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문화, 관광, 항공, 외무 등 	1,942개	'23년 조사 '24년 개선 추진
합계	44개 분야	_	5,782개	



관련 분야 개인정보 조문 서식 등의 개선 계획 모니터링 필요

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방안





▶ 이행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내 (가칭)'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분야별 협의회 구성

(협의체 구성) 개인정보위, 주요 집중관리 시스템 소관 부처 등



보고



개인정보 보호 연차 보고서(국회 보고)에 연간 이행 현황 포함, 연간 이행 현황 국무회의 보고 추진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지표에 반영

>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별 역할		
각 부처	 소관「집중관리 시스템」현황 파악· 소관 분야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구성·운영 안전조치 등 자체 실태 점검 및 감사 계획 수립·시행 내부 징계 규정 개정 		
관계부처	기관 감사법령 및 규정 개정 등 과제 이행 협조		
개인정 <u>보보호</u> 위원회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공공부문 안전조치 기준 마련 집중관리 시스템 기획 점검· 소요 예산 확보 협의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보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운영 		



감사합니다